| 투자 위험 등급<br>2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10월 2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각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분배금은 실제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 이외에 투자신탁재산 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지급될 수 있어, 이익금을 초과하여 투자원금의 일부가 분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

니다. 이에 따라 분배금을 수령하더라도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12. 분배금에는 과세가 적용되므로, 결산 시 연 1 회 분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제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은 연 1 회 결산하여 해당 기간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나, 결산 외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익이 발생한 달에는 과세되고, 손실이 발생한 달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익 부분만 반복적으로 과세될 수 있어 세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기준일: 2026.10.27

##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A7300]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추적오차 발생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 투자위험 등에 노출됨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공표하는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공표하는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의 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도록 추적대상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을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대상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적오차의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신규 편입 예정 종목 등 다른 종목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KOSPI200 지수

| | |
|---|---|
| **지수소개** |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OSPI200 지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200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 한 것임 (https://index.krx.co.kr /) |
| **유니버스** | **[심사대상종목]**<br>매년 정기변경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 최종 매매거래일(이하 “심사기준일”)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구성종목<br>・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br>・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br>・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br>・신규 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일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br>- 코스닥시장에서 이전 상장한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종목<br>- 심사기준일 이전에 기존 구성종목의 기업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구성종목에 편입되거나, 신규상장 종목 중 심사기준일 이전에 특례로 편입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기존 구성종목인 경우<br>・그 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종목<br><br>**[산업군 분류]** |

| | |
|---|---|
| | - KRX 산업분류(KRICS : 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를 참고하여 다음 9개 산업군으로 분류. 산업군 분류는 심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함<br>* KRICS(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r>1. 에너지화학 2. 소재 3. 산업재<br>4. 모빌리티 5. 정보기술 6. 금융 및 부동산 7. 소비재<br>8. 헬스케어 9. 미디어 및 콘텐츠 |
| **편입대상종목 (선정 기준)** | **[1차 선정]**<br>산업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br>・해당 산업군의 심사대상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구성종목을 선정하되, 누적시가총액이 처음으로 해당 산업군 전체시가총액의 85%에 해당하는 종목까지 선정<br>・다만,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전체 심사대상종목수의 85% 이내(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br><br>**[2차 선정]**<br>1차선정 후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구성종목을 확정<br>・기존 구성종목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의 11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음<br>・신규로 구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종목이 속한 산업군 내 기존 구성종목수의 90% 이내이어야 함. 단,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예외<br><br>**[3차 선정]**<br>2차선정까지 완료한 후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br>・200종목 미만: 구성종목에 선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추가선정. 단, 유동성 기준은 충족 필요<br>・200종목 초과: 구성종목에 선정된 종목 중에서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제외<br><br>[대형주 특례] 1차~3차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선정된 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을 제외함. 이 경우 시가총액은 구성종목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 15매매거래일의 일평균시가 총액으로 함 |
| **구성종목수** | 200종목 |
| **비중결정 방식** |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방식 |
| **종목교체기준 (정기변경)** | 정기변경일 (매년 2회) :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
| **종목교체기준 (수시변경)** | 수시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종목에서 제외 또는 편입<br><br>[부적합 종목]<br>상장폐지 결정 / 관리종목 지정 /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목<br><br>[신규상장 종목]<br>신규상장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50위 이내이면서 유동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상위 50위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가총액에 |

| | |
|---|---|
| | 0.5를 곱한 값 이상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정기변경일 이전에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가총액 및 유동시가총액은 신규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 및 일평균유동시가총액(의무보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일평균유동시가총액)으로 함<br><br>[그 외, 합병 및 기업분할] |
| **산출기준일 및 가격** | 1990년 1월 30일, 100pt |

※ 기초지수(추적대상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기초지수(추적대상지수) : KOSPI200 10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상장지수투자신탁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 보수 | 지정참가 회사보수 | 동종 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투자신탁 | 없음 | 0.0170 | 0.001 | - | 0.0370 | 4 | 8 | 12 | 21 | 48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 종류 | 최초 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2025/01/29~2026/01/28 | 2024/01/29~2026/01/28 | 2023/01/29~2026/01/28 | 2021/01/29~2026/01/28 | 2012/01/09~2026/01/28 |
| 투자신탁 | 2012.01.09 | 129.88 | 53.64 | 34.77 | 15.24 | 10.65 |
| 기초지수(%) | | 125.31 | 50.59 | 32.22 | 12.74 | 8.51 |
| 수익률변동성(%) | | 21.52 | 20.39 | 18.69 | 17.54 | 16.91 |

* 기초지수: KOSPI200 100% (기초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은총 | 1991 | 책임(매니저) | 21 | 41,572 | 89.70 | 45.15 | 109.57 | 55.59 | 4년 2개월 |
| 전상훈 | 1986 | 부책임(매니저) | 27 | 52,542 | 80.51 | - | | | 2년 9개월 |

* 기준일 : 2026년 1월 28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tr><td></td><td>*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br>*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td></tr>
<tr><td>투자자<br>유의사항</td><td>·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br>·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r>·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주요투자<br>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r><td>원본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td></tr>
<tr><td>신용위험</td><td>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파생상품<br>투자위험</td><td>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br>해지의 위험</td><td>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
<tr><td>추적오차<br>발생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가격 변동, 투자신탁보수, 매매수수료,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td></tr>
<tr><td>이익금 초과<br>분배에<br>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 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투자신탁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재원이 감소하거나 운용전략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익금이 분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 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 분배가 지속될 경우 실제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td><td>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br>※법인투자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td></tr>
<tr><td>상장폐지 위험</td><td>추적오차가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 수 미달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td></tr>
<tr><td>상장거래에 따른 가격괴리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td></tr>
<tr><td>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 위험</td><td>이 투자신탁에서 추종하는 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추적대상지수의 산출이 불가할 경우, 타 지수제공기관이나 당사에서 산출한 추적대상지수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변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적오차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방법</td><td>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매수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td><td>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방법</td><td>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매도(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br>-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colspan="3">
<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 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kr)</td></tr>
</table>

| | | | |
|---|---|---|---|
| **모집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제한없음 |
| **효력 발생일** | 2026년 11월 3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해당사항 없음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7300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표시:

- 상장지수 (또는 "ETF"라고 함)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모집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투자자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자도 그 수익증권의 모집에 대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투자자는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설정 청구 가능)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거래소 상장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은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2012년 1월 10일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상장요건

1. 펀드규모 :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나.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다.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업무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3. 기초자산: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나. 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시장
(2)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3)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4. 자산구성방법: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나.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
다.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

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5)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5배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다.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담보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존속기한: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7. 지수 등 이용계약: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제3항제1호, 소송 등에 관한 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상장폐지**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상장폐지 요건

상장지수펀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상장폐지한다.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주1) 상기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동 규정들의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되며, 수익증권이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7300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변경시행일 | 주요 변경 사항 |
|---|---|
| 2012.01.09 | 최초 설정 |
| 2013.04.25 | -투자신탁 명칭변경 [한화아리랑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한화ARIRANG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br>-투자신탁 보수 인하 |
| 2014.01.13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용명 → 장승한 |
| 2015.07.30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장승한 → 이진욱 |
|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반영:<br>2등급(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2017.11.10 | 투자신탁 보수 인하 |
| 2018.06.29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이진욱 → 사봉하 |
| 2019.01.14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사봉하 → 김홍주 |
|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
| 2019.12.27 | -투자대상자산 추가: 채권<br>-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
| 2020.04.01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 → 박수민 |
| 2020.06.03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박수민 → - |
| 2021.01.20 | 투자위험등급 변경: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2등급(높은 위험) |
| 2021.02.1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홍주 → 남용수 |
| 2021.09.14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남용수 → 윤준길 |
| 2022.02.18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설 (김은총) |
| 2022.07.21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한국예탁결제원→한국펀드파트너스)<br>-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br>- 지수사용료 관련 문구 신설 |
| 2023.01.18 |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br>- 수익률 변동성 변경 (21.73% → 22.31%) |
| 2024.01.30 | - 정기갱신(2023.12.31)<br>- 수익률 변동성 변경(22.31% → 16.23%)<br>-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23.02.20)<br>-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변경 반영<br>-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4.01.17) |
| 2024.04.25 | - 투자신탁보수 인하<br>1) 집합투자업자 보수: 0.019% → 0.001%<br>2)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0% → 0.005%<br>-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2024.07.23 | -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후 : 한화 PLUS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표기)<br>-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br>- 채권평가회사 관련 변경사항 반영 |
| 2024.10.24 | 투자제한 단서조항 신설 |
| 2025.02.19 | - 정기갱신(2024.12.31)<br>-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기준)<br>-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 37.75%<br>-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2025.02.04) |
| 2025.05.29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윤준길 → 김은총)<br>-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김은총 → 전상훈) |
| 2026.02.13 |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2025.12.31)<br>-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변경: 37.75% → 40.60%<br>- 투자신탁분배금 관련 기재사항 정정 (이익금 초과 분배)<br>-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5.07.01시행)<br>-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2026.01.28) |
| 2026.11.03 | 추적대상지수(KOSPI200 지수) 방법론 기재사항 변경<br>(*한국거래소 KRX 산업분류체계 도입)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6.01.28)

| 구분 | 성명 | 생년 |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국내-주식형, 단위: %) | | | | 주요경력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1년 | 최근 2년 | |
| 책임 (매니저) | 김은총 | 1991 | 21 | 41,572 | 89.70 | 45.15 | 109.57 | 55.59 | - 운용경력년수: 4년 2개월<br>- 한양대 재무금융 박사<br>- 연세대 산업공학과 석사<br>- 경북대 천문대기과학/경제학 학사<br>-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

| | | | | | | | | | |
|---|---|---|---|---|---|---|---|---|---|
| | | | | | | | | | (2019.03~2021.06)<br>- 한화자산운용 (2021.07 ~ 현재) |
| 부책임<br>(매니저) | 전상훈 | 1986 | 27 | 52,542 | 80.51 | - | | | - 운용경력년수: 2년 9개월<br>- 아주대학교 금융공학 석사<br>- NICE P&I<br>- 한화자산운용 (2018.12 ~ 현재)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 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
| 2025.05.29 | 윤준길 | 김은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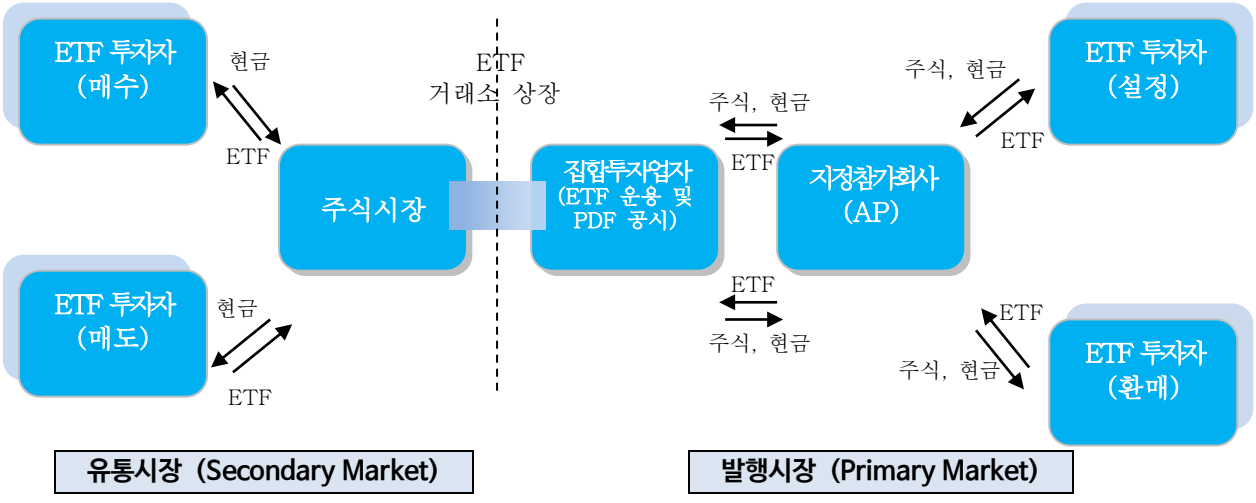
###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 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
| 2025.05.29 | 김은총 | 전상훈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공표하는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한도 |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
|---|---|---|
| ①주식 | - 60%이상 | - 주식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
| ②채권 | - 40%이하 |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
| ③집합투자증권등 | - 40%이하 | - 집합투자증권등이란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함 |
| ④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
| ⑤환매조건부매도 | - 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 - 환매조건부매도란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
| ⑥증권의 대여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 |
| ⑦증권의 차입 | - 상기의 ①주식 및 ②채권, ③집합투자증권등의 차입은 20%이하 | |
| 기 타 | -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br>-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br>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br>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br>-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 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br>-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한다. | |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합니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br>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②동일종목 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
| ③집합투자증권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br>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br>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br>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br>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④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⑤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⑥추적대상 지수관련투자 | -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br>-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③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③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⑤~⑦의 투자한도 및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대상자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의 나.투자제한의 ②, ③의 가, ⑤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가.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공표하는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의 성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도록 추적대상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을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추적대상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대상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적오차의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신규 편입 예정종목 등 다른 종목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 포트폴리오 조정**

이 투자신탁은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신탁재산 내 운용종목을 교체 또는 조정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수익률을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 신탁재산내 구성종목의 부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다. 추적오차 발생 요인**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의 수익률과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비용의 최소

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편입 종목수 조정 등의 다양한 보완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제반 비용(투자신탁보수,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은 순자산가치를 감소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은 순자산가치를 증가시켜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 추적대상지수 구성종목의 교체나 비율변경 등은 신탁재산내역을 조정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 내 구성종목 중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기초지수(추적대상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사정 변경, 새로운 기초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이 기초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기초지수(추적대상지수) :** KOSPI200지수 100%

■ **KOSPI200 지수**

| | |
|---|---|
| **지수소개** |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OSPI200 지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시장지수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200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 한 것임<br>(https://index.krx.co.kr /) |
| **유니버스** | **[심사대상종목]**<br>매년 정기변경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 최종 매매거래일(이하 “심사기준일”) 현재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 구성종목<br>・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br>・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br>・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br>・신규 상장일(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일 포함)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br>- 코스닥시장에서 이전 상장한 경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이 경과한 종목<br>- 심사기준일 이전에 기존 구성종목의 기업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구성종목에 편입되거나, 신규상장 종목 중 심사기준일 이전에 특례로 편입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기존 구성종목인 경우<br>・그 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종목<br><br>**[산업군 분류]**<br>- KRX 산업분류(KRICS : 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를 참고하여 다음 9개 산업군으로 분류. 산업군 분류는 심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함<br>* KRICS(KRX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br>1. 에너지화학 2. 소재 3. 산업재<br>4. 모빌리티 5. 정보기술 6. 금융 및 부동산 7. 소비재<br>8. 헬스케어 9. 미디어 및 콘텐츠 |
| **편입대상종목** | **[1차 선정]** |

| | |
|---|---|
| **(선정 기준)** | 산업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br>・해당 산업군의 심사대상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구성종목을 선정하되, 누적시가총액이 처음으로 해당 산업군 전체시가총액의 85%에 해당하는 종목까지 선정<br>・다만,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전체 심사대상종목수의 85% 이내(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제외<br><br>**[2차 선정]**<br>1차선정 후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구성종목을 확정<br>・기존 구성종목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의 11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음<br>・신규로 구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종목이 속한 산업군 내 기존 구성종목수의 90% 이내이어야 함. 단,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예외<br><br>**[3차 선정]**<br>2차선정까지 완료한 후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br>・200종목 미만: 구성종목에 선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추가선정. 단, 유동성 기준은 충족 필요<br>・200종목 초과: 구성종목에 선정된 종목 중에서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 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제외<br><br>[대형주 특례] 1차~3차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종목에 해당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선정된 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을 제외함. 이 경우 시가총액은 구성종목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 15매매거래일의 일평균시가 총액으로 함 |
| **구성종목수** | 200종목 |
| **비중결정 방식** | 유동주식수 가중 시가총액방식 |
| **종목교체기준 (정기변경)** | 정기변경일 (매년 2회) :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
| **종목교체기준 (수시변경)** | 수시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종목에서 제외 또는 편입<br><br>[부적합 종목]<br>상장폐지 결정 / 관리종목 지정 /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목<br><br>[신규상장 종목]<br>신규상장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50위 이내이면서 유동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상위 50위에 해당하는 종목의 시가총액에 0.5를 곱한 값 이상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정기변경일 이전에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가총액 및 유동시가총액은 신규상장일로부터 15매매거래일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 및 일평균유동시가총액(의무보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일평균유동시가총액)으로 함 |

| | |
|---|---|
| | [그 외, 합병 및 기업분할] |
| **산출기준일 및 가격** | 1990년 1월 30일, 100pt |

※ 기초지수(추적대상지수)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전략**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기초지수 추종 위험 관리: 바스켓 구성종목 모니터링 및 사후적(ex-post) 추적오차 점검을 통해 기준지수와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합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KOSPI200지수 관련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일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
| **신용위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

## 나. 특수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추적오차 발생위험** |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가격 변동, 투자신탁보수, 매매수수료,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
| **이익금 초과 분배에 따른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 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재원이 감소하거나 운용전략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익금이 분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 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 분배가 지속될 경우 실제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br>※법인투자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
| **상장폐지 위험** | 추적오차가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탁의 원본액이 일정액 미만으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거나, 수익자 수 미달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상장거래에 따른 가격괴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인 기준가격과 시장수급의 변화로 인해 형성되는 시장거래가격이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 위험** | 이 투자신탁에서 추종하는 지수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기관의 귀책사유로 추적대상지수의 산출이 불가할 경우, 타 지수제공기관이나 당사에서 산출한 추적대상지수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적대상지수 산출기관의 변경에 따라 예상치 못한 추적오차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총비용** | ETF 는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기타 운용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거래 |

| | |
|---|---|
| | 시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br>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br>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추적대상지수 편입종목 교체하는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br>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로부터 3영업일간<br>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추적대상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추적대상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br>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br>5.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차 거래 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br>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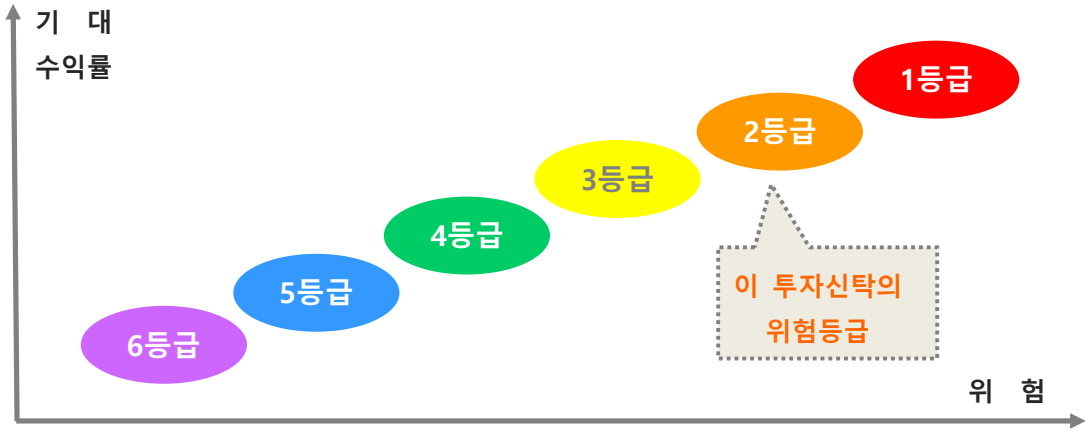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40.60%]**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

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 기준은 한화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기의 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급 |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 1등급<br>(매우 높은 위험) |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br>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br>(높은 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br>(다소 높은 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br>(보통 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br>(낮은 위험) | ①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br>(매우 낮은 위험) |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br>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br>-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br>-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br>-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레버리지 수준, 환위험(환헷지 50% 미만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 구분 | 1등급 (매우높은위험) | 2등급 (높은위험) | 3등급 (다소높은위험) | 4등급 (보통위험) | 5등급 (낮은위험) | 6등급 (매우낮은위험) |
|---|---|---|---|---|---|---|
| 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 50% 초과 | 5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10% 이하 | 1% 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자금지급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수대금 지급 및 수익증권 수도)와 동일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한 매입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하여 매입하기를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증권 및 자금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수령합니다.

(2)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설정단위의 변경 예시〉

| |
|---|
| ➢ 이 투자신탁을 최초 설정할 당시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가 예를 들어 250pt일 경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하여 납입해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은 12.5억원 [250pt × 100(승수) × 50,000좌 (설정단위)]이 될 것입니다.<br>➢ 그러나,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500pt가 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은 25억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br>➢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익증권의 수량을 25,000좌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3)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산출 :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 정산일 : 투자자는 상기 정산금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설정요청일에 발생하게 되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내역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 |
|---|
|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정산금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br>-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br>- 익일에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등<br>그러나, 상기 조치가 정산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4) 수익증권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부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수익증권 설정청구의 효력〉

| |
|---|
|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br>➢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br>➢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 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합니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 분의 115 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⑤ 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합니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합니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금전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금전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추적대상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 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 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추적대상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추적대상지수 채용일로부터 제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 및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4)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 구 분 | T-1일 | T일 | T+1일 | T+2일 |
|---|---|---|---|---|
| 투자자 | | 지정참가회사에 설정 청구 | |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수익증권 수령 |
| 지정참가회사 | | 집합투자업자에 설정 청구 |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투자자계좌에 수익증권 입고 |
| 집합투자업자 |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한국거래소 등) | 설정청구 내역 확인 및 승인 |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 |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전자등록) |
| 전자등록기관 | | 설정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 | |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
| 신탁업자 | | | | 납부금등의 납부 확인 |

(가) 설정청구일 전영업일(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나) 설정청구일(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한 자산(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투자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 설정청구일 익영업일(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설정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신청을 합니다.

(라) 설정일(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입고를 설정일(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현금화) 방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현금화)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와 동일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환매
- 법인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개인수익자의 경우는 투자신탁의 환매 청구에 의한 수익증권 환매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수령합니다.

### (2) 수익증권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 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 |
|---|
| ➢ 투자신탁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br>➢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3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

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전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금전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금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금전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

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⑫ 제11항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 | | |
|---|---|---|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해지 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 허용**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O |

(3)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 구 분 | T-1일 | T일 | T+1일 | T+2일 |
|---|---|---|---|---|
| 투자자 | |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청구 | |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주식 및 현금) 수령 |
| 지정참가회사 | | 집합투자업자에 환매 청구 | 인수도명세 확정 및 수익자 통보 |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환매자산 입고 |
| 집합투자업자 |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 (한국거래소 등) | 환매청구 내역 확인 및 승인 |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 신청 | 투자신탁 일부해지 |
| 전자등록기관 | | 환매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 | |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
| 신탁업자 | | | |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산 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

(가) 환매청구일 전영업일(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나) 환매청구일(T일)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을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다) 환매청구일 익영업일(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환매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라) 환매일(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고, 수익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작성 및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추적대상지수 편입종목 교체하는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추적대상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추적대상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증권시장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증권시장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매일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매일 |
| 기준가격 공시방법 | 전자공시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
| ②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
|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

| | |
|---|---|
|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⑤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br>1. 종가괴리율[주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br>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
| ⑥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
|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br>(비상장주식,비상장채무증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br>1.취득가격<br>2.거래가격<br>3.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
|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br>-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br>-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
|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

주1) 종가괴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 (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보수 | 0.0010 | 매 1,4,7,10월 말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지급 |
| 지정참가회사 보수 | 0.0010 | |
| 신탁업자 보수 | 0.0100 | |
| 일반사무관리보수 | 0.0050 | |
| 총보수 | 0.0170 | |
| 기타 비용 | 0.0200 | 사유발생시(주1 참조) |
| 총보수 및 비용 | 0.0370 | - |
| 증권 거래비용 | 0.0206 | 사유발생시(주2 참조) |

주1)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지수(KOSPI200지수) 사용에 대한 지수사용료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그 외의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기타비용 | 155,013 |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였으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163,656 |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
|---|---|
| 금융비용 | -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 구분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보수 및 비용 | 4 | 8 | 12 | 21 | 48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1)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다만,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8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영업일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다) 위의 (가) 내지 (나)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현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의 수익을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은 예정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된 이익금을 초과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당월에 발생된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 보유재산 매매를 통하여 기대했던 매매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당월에 발생된 이익금이 분배할 금액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
-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3)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를 포함)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 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회계감사법인 | 감사의견 |
|---|---|---|
| 제12기(2023.01.01 ~ 2023.12.31)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제13기(2024.01.01 ~ 2024.12.31)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제14기(2025.01.01 ~ 2025.12.31)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 요약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운용자산 | 1,068,525,549,227 | 541,558,773,978 | 662,068,651,624 |
| 유가증권 | 1,061,766,892,425 | 540,923,561,270 | 650,919,079,575 |
| 파생상품 | 0 | 0 | 0 |
| 부동산/실물자산 | 0 | 0 | 0 |
| 현금 및 예치금 | 6,758,656,802 | 635,212,708 | 11,149,013,332 |
| 기타 운용자산 | 0 | 0 | 558,717 |
| 기타자산 | 2,586,480,188 | 2,209,291,735 | 4,843,480,963 |
| 자산총계 | 1,071,112,029,415 | 543,768,065,713 | 666,912,132,587 |
| 운용부채 | 0 | 0 | 0 |
| 기타부채 | 1,089,242,938 | 96,832,064 | 4,161,127,911 |
| 부채총계 | 1,089,242,938 | 96,832,064 | 4,161,127,911 |
| 원본 | 410,584,500,000 | 397,493,400,000 | 428,436,000,000 |
| 수익조정금 | 0 | 0 | 0 |
| 이익조정금 | 659,438,286,477 | 146,177,833,649 | 234,315,004,676 |
| 자본총계 | 1,070,022,786,477 | 543,671,233,649 | 662,751,004,676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운용수익 | 539,995,611,657 | -60,298,625,817 | 145,431,685,984 |
| 이자수익 | 177,079,832 | 112,000,843 | 307,891,351 |
| 배당수익 | 14,791,350,496 | 11,431,064,614 | 10,051,075,049 |
| 매매평가차손익 | 524,166,470,257 | -72,211,404,730 | 134,846,260,756 |
| 기타수익 | 860,711,072 | 369,713,456 | 226,458,828 |
| 운용비용 | 597,495,844 | 14,239,124,895 | 14,621,105,150 |
| 관련회사보수 | 129,896,821 | 154,783,113 | 246,402,500 |
| 매매수수료 | 184,643,380 | 147,579,393 | 168,000,398 |
| 기타비용 | 282,955,643 | 13,936,762,389 | 14,206,702,252 |
| 당기순이익 | 539,398,115,813 | -74,537,750,712 | 130,810,580,834 |
| 매매회전율 | 10 | 6 | 6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원)

| 자산유형별 거래비용 | | | | | | |
|---|---|---|---|---|---|---|
| 구분 | 당해 연도 | | | 전년도 | | |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거래금액(A) | 거래비용 | |
|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금액(B) | 거래비용 비율(B/A) |
| 주식 | 1,227,007,796,854 | 87,540,330 | 0.0071 | 815,175,725,110 | 22,151,420 | 0.0027 |
| 주식 이외의 증권 | 67,578,671,541 | 11,174,620 | 0.0165 | 69,559,367,437 | 3,571,600 | 0.0051 |
| 장내파생 | 186,997,865,900 | 18,705,450 | 0.0100 | 155,672,791,134 | 15,566,470 | 0.0100 |
| 장외파생 | 0 | 0 | 0.0000 | 0 | 0 | 0.0000 |
| 부동산 | 0 | 0 | 0.0000 | 0 | 0 | 0.0000 |
| 기타(레포,대차,콜 등) | 356,687,990,795 | 47,919,265 | 0.0134 | 194,918,112,815 | 32,993,895 | 0.0169 |
| 합 계 | 1,838,272,325,090 | 165,339,665 | 0.0090 | 1,235,325,996,496 | 74,283,385 | 0.0060 |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원, %)

| 매매회전율 | | | | | | |
|---|---|---|---|---|---|---|
| 주식 매수 | | 주식 매도 | |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 매매회전율(A/B) |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A) | | | |
| 1,122,560 | 76,634,613,576 | 1,144,643 | 69,102,340,758 | 726,637,620,221 | 9.50988 | |

##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운용자산 | 1,068,525,549,227 | 541,558,773,978 | 662,068,651,624 |
| 현금및예치금 | 6,758,656,802 | 635,212,708 | 11,149,013,33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7,656,802 | 193,887,308 | 11,146,620,444 |
| 증거금 | 511,000,000 | 441,325,400 | 2,392,888 |
| 유가증권 | 1,061,766,892,425 | 540,923,561,270 | 650,919,079,575 |
| 지분증권 | 1,014,178,585,910 | 497,408,020,490 | 645,353,585,305 |
| 수익증권 | 47,588,306,515 | 43,515,540,780 | 5,565,494,270 |
| 기타운용자산 | 0 | 0 | 558,717 |
| 기타자산 | 2,586,480,188 | 2,209,291,735 | 4,843,480,963 |
| 매도유가증권미수금 | 0 | 0 | 162,726,125 |
| 정산미수금 | 135,562,500 | 0 | 223,858,000 |
| 미수이자 | 21,133,254 | 6,416,636 | 26,363,342 |
| 미수배당금 | 2,379,513,051 | 2,173,076,141 | 4,405,248,964 |
| 선급비용 | 16,261,000 | 16,528,000 | 14,688,000 |
| 기타미수입금 | 34,010,383 | 13,270,958 | 10,596,532 |
| 자 산 총 계 | 1,071,112,029,415 | 543,768,065,713 | 666,912,132,587 |
| 기타부채 | 1,089,242,938 | 96,832,064 | 4,161,127,911 |
|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 1,018,298,497 | 18,474,935 | 4,092,448,135 |
| 정산미지급금 | 0 | 35,150,000 | 0 |
| 미지급운용수수료 | 1,717,224 | 943,204 | 18,882,643 |
| 미지급판매수수료 | 1,717,224 | 960,928 | 993,786 |
| 미지급수탁수수료 | 17,172,543 | 9,433,909 | 9,938,211 |
|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 8,586,258 | 4,716,939 | 9,938,211 |
| 수수료미지급금 | 40,586,192 | 25,448,994 | 27,323,290 |
| 기타미지급금 | 1,165,000 | 1,703,155 | 1,603,635 |
| 부 채 총 계 | 1,089,242,938 | 96,832,064 | 4,161,127,911 |
| 원 본 | 410,584,500,000 | 397,493,400,000 | 428,436,000,000 |
| 이익잉여금 | 659,438,286,477 | 146,177,833,649 | 234,315,004,676 |
| 자 본 총 계 | 1,070,022,786,477 | 543,671,233,649 | 662,751,004,676 |
| 부채 및 자본 총계 | 1,071,112,029,415 | 543,768,065,713 | 666,912,132,587 |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 | 2025.01.01 ~ 2025.12.31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운용수익(운용손실) | 539,995,611,657 | -60,298,625,817 | 145,431,685,984 |
| 투자수익 | 15,251,920,663 | 11,651,743,412 | 10,530,653,148 |
| 이자수익 | 177,079,832 | 112,000,843 | 307,891,351 |
| 배당금수익 | 14,791,350,496 | 11,431,064,614 | 10,051,075,049 |
| 수수료수익 | 283,490,335 | 108,677,955 | 171,686,748 |
|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 553,986,738,953 | 87,053,351,052 | 154,636,312,890 |
| 지분증권매매차익 | 145,138,464,379 | 35,584,948,236 | 47,951,673,625 |
| 파생상품매매차익 | 28,677,546,300 | 15,865,742,057 | 14,018,163,200 |
| 지분증권평가차익 | 380,170,728,274 | 35,602,660,759 | 92,666,476,065 |
|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 29,820,268,696 | 159,264,755,782 | 19,790,052,134 |
| 지분증권매매차손 | 6,334,288,119 | 39,366,401,773 | 8,360,600,054 |
| 파생상품매매차손 | 17,984,137,650 | 18,537,251,028 | 11,429,452,080 |
| 지분증권평가차손 | 5,501,842,927 | 101,361,102,981 | 0 |
| 기타운용수익 | 577,220,737 | 261,035,501 | 54,772,080 |
| 운용비용 | 597,495,844 | 14,239,124,895 | 14,621,105,150 |
| 운용수수료 | 7,642,039 | 41,639,590 | 117,041,362 |
| 판매수수료 | 7,624,315 | 6,477,019 | 6,159,890 |
| 수탁수수료 | 76,420,368 | 64,596,197 | 61,600,624 |
| 사무수탁수수료 | 38,210,099 | 42,070,307 | 61,600,624 |
| 매매수수료 | 184,643,380 | 147,579,393 | 168,000,398 |
| 기타운용비용 | 282,955,643 | 13,936,762,389 | 14,206,702,252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한화 | 539,398,115,813 | -74,537,750,712 | 130,810,580,834 |
|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한화 | 30,521,713.4 | -4,205,556.9 | 7,173,841.68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출자지분수) | 금액 |
| 2023/01/01~2023/12/31 | 17 | 507,802 | 12 | 386,715 | 11 | 362,577 | 18 | 662,751 |
| 2024/01/01~2024/12/31 | 18 | 662,751 | 9 | 327,966 | 10 | 370,379 | 17 | 543,671 |
| 2025/01/01~2025/12/31 | 17 | 543,671 | 13 | 541,012 | 12 | 539,703 | 17 | 1,070,023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2025/01/29~2026/01/28 | 2024/01/29~2026/01/28 | 2023/01/29~2026/01/28 | 2021/01/29~2026/01/28 | 2012/01/09~2026/01/28 |
| 투자신탁 | 129.88 | 53.64 | 34.77 | 15.24 | 10.65 |
| 기초지수 | 125.31 | 50.59 | 32.22 | 12.74 | 8.51 |
| 수익률변동성(%) | 21.52 | 20.39 | 18.69 | 17.54 | 16.9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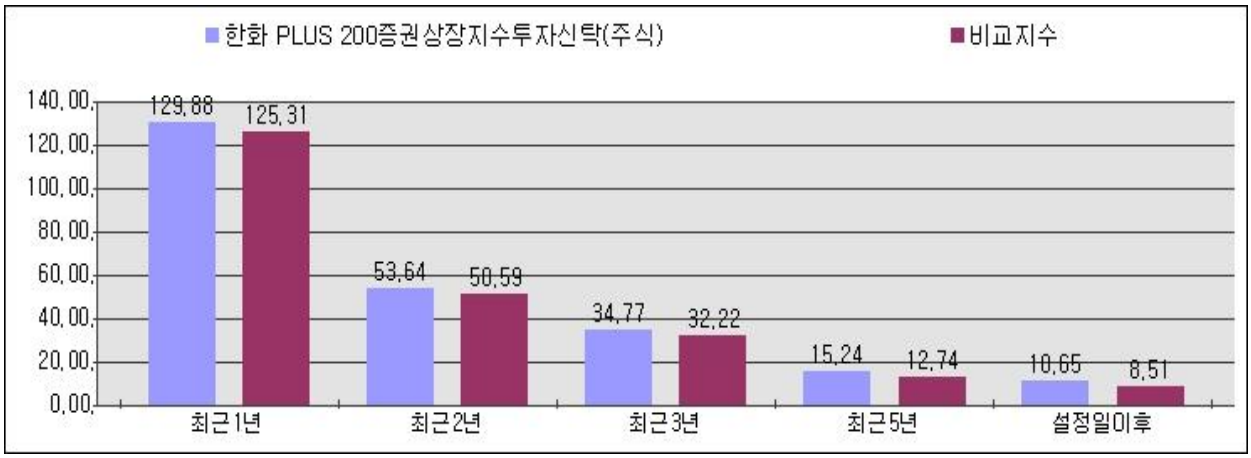
(주 1) 기초지수 : KOSPI200 100%

(주 2) 기초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5년차 |
|---|---|---|---|---|---|
| | 2025/01/29~ 2026/01/28 | 2024/01/29~ 2025/01/28 | 2023/01/29~ 2024/01/28 | 2022/01/29~ 2023/01/28 | 2021/01/29~ 2022/01/28 |
| 투자신탁 | 129.88 | 2.81 | 3.65 | -6.26 | -11.46 |
| 기초지수 | 125.31 | 0.76 | 1.9 | -8.38 | -14.03 |

(주 1) 기초지수 : KOSPI200 100%

(주 2) 기초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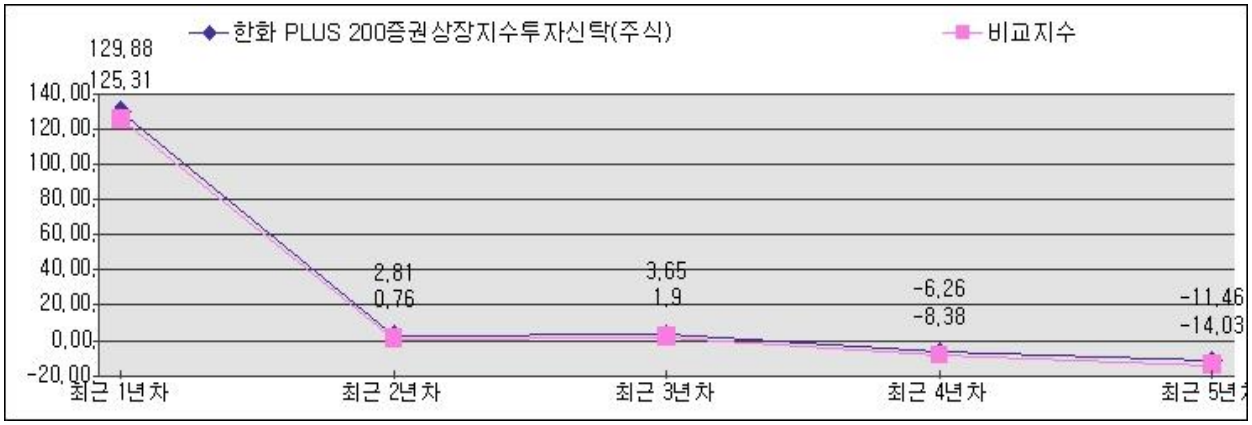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26.01.28,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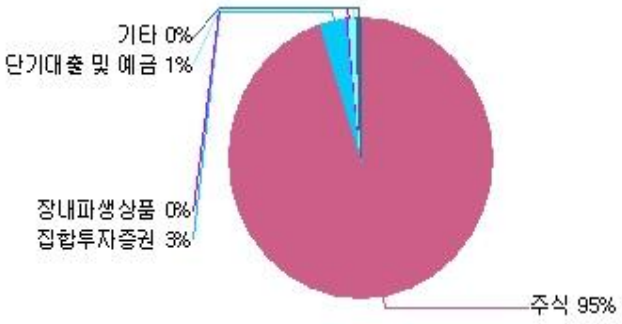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KRW | ,207,068 | 0 | 0 | 41,142 | 511 | 0 | 0 | 0 | 0 | 15,659 | 5,691 | ,270,070 |
| | (95.04) | (0) | (0) | (3.24) | (0.04) | (0) | (0) | (0) | (0) | (1.23) | (0.45) | (100) |
| 자산합계 | ,207,068 | 0 | 0 | 41,142 | 511 | 0 | 0 | 0 | 0 | 15,659 | 5,691 | ,270,070 |
| | (95.04) | (0) | (0) | (3.24) | (0.04) | (0) | (0) | (0) | (0) | (1.23) | (0.45) | (100) |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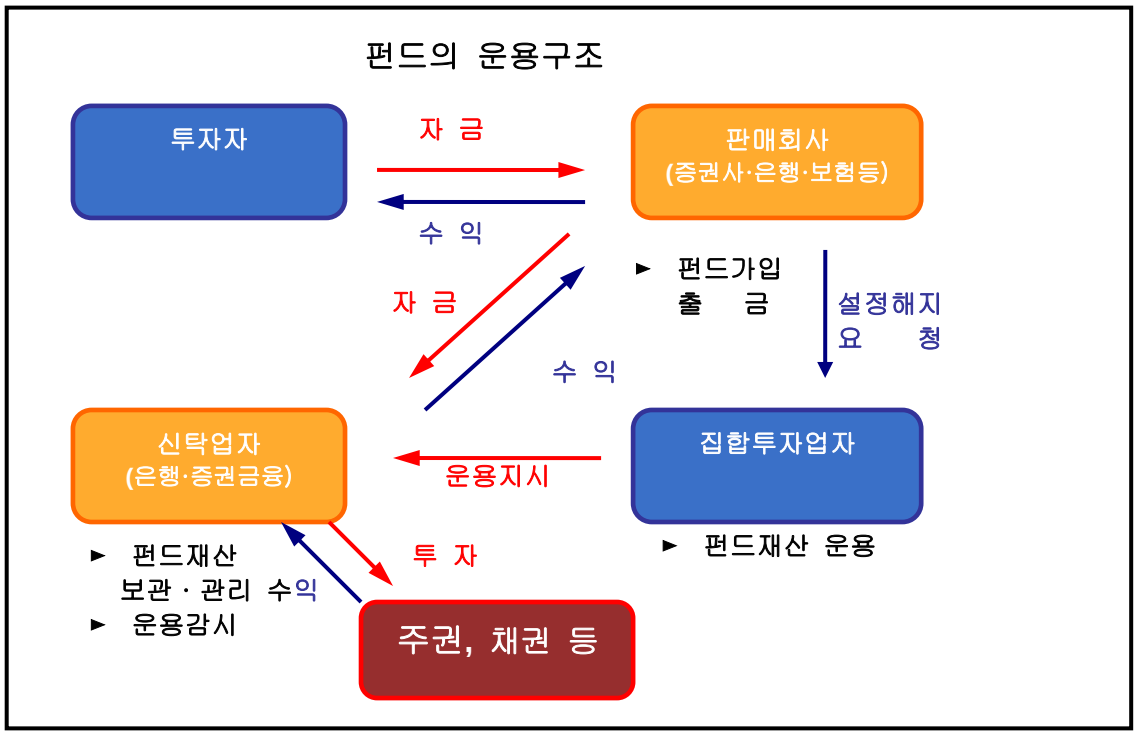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기타 0%
단기대출 및 예금 1%
장내파생상품 0%
집합투자증권 3%
주식 95%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 개요

| 회사명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br>(전화) 02-6950-0000 | |
|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kr | |
| 회사연혁 |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br>(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br>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 |
| | 푸르덴셜자산운용 |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br>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br>(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br>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br>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br>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br>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
| | 한화투자신탁운용 |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br>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 자본금 | 1조 700억 | |

###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 내용

(단위: 백만원)

|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목 | 제37기 (24.12.31) | 제36기 (23.12.31) | 항목 | 제37기 (24.1.1 ~24.12.31) | 제36기 (23.1.1 ~23.12.31) |
| 자 산 | | | 영업수익 | 151,890 | 131,62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424 | 64,128 | 영업비용 | 105,418 | 97,521 |
| 예치금 | 2,517 | 10,704 | 영업이익 | 46,472 | 34,106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3,830 | 177,506 | 영업외수익 | 45,109 | 5,0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8,314 | 25,992 | 영업외비용 | 2,965 | 1,767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005,522 | 1,042,559 | 법인세차감전 | 88,616 | 37,357 |
| 대출채권 | 2,787 | 2,340 | 법인세비용 | 21,040 | 7,675 |
| 유형자산 | 15,906 | 13,008 | **당기순이익** | **67,576** | **29,682** |
| 무형자산 | 2,725 | 2,995 | | | |
| 이연법인세자산 | 3,959 | 10,828 | | | |
| 기타금융자산 | 64,408 | 63,789 | | | |
| 기타자산 | 1,710 | 1,688 | | | |
| **자 산 총 계** | **1,482,102** | **1,415,537** | | | |
| 부 채 | | | | | |
| 예수부채 | 2,320 | 10,691 | | | |
| 충당부채 | 1,721 | 1,151 | | | |
| 순확정급여부채 | -1,295 | -1,912 | | | |
| 당기법인세부채 | 8,663 | 3,826 | | | |
| 리스부채 | 11,649 | 9,550 | | | |
| 기타금융부채 | 21,741 | 16,020 | | | |
| 기타부채 | 1,017 | 1,001 | | | |
| **부 채 총 계** | **45,816** | **40,327** | | | |
| 자 본 | | | | | |
| 자본금 | 1,070,000 | 1,070,000 | | | |

| | | | | | |
|---|---|---|---|---|---|
| 기타불입자본 | 3,459 | 3,459 | |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507 | -2,008 | | | |
| 이익잉여금 | 371,334 | 303,758 | | | |
| **자 본 총 계** | **1,436,286** | **1,375,209** | |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482,102** | **1,415,537** |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1.28 현재, 단위: 억원)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 |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 단기금융 | 총 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계약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기타 | | | | | |
| 수탁고 | 87,354 | 67,566 | 10,875 | 0 | 49,253 | 19,914 | 0 | 38,884 | 115,615 | 12,161 | 91,738 | 493,365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0, (02) 1566-1000 |
| 홈페이지 주소 | www.citibank.co.kr |

(2) 주요 업무

(가)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펀드파트너스㈜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br>(02) 769-7855 |
| 회사연혁 등 | www.korfp.com |

*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2022.07.21일자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한국펀드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2)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 투자신탁의 결산 및 분배금 지급과 관련한 정보의 작성 및 제공 업무
- 정산금액의 계산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의 공시 및 공고 업무
- 투자신탁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시 및 공고 업무
-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투자신탁보수 및 운용비용 등의 산정 업무
- 기타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음

###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구 분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KIS자산평가 | FN자산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br>율곡로 75<br>02-2251-13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국회대로 70길 19<br>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국제금융로6길 38<br>02-3215-1400 | 서울특별시 강서구<br>마곡중앙2로 61<br>02-721-5300 |
| 홈페이지 주소 | www.koreaap.com | www.nicepni.com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 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및 첨부서류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와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중 중요사항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자가 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등 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마.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T. (02) 2192-1114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신탁계약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상기 3) 및 4)에 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

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운용보고서

- 이 집합투자기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www. hanwha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025.01.29 ~ 2026.01.28)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 이해관계인 | | 거래의 종류 | 자산의 종류 | 거래 금액 |
|---|---|---|---|---|
| 성명(상호) | 관 계 | | | |
| 한화투자증권 | 계열회사 | 중개거래 | 주식 | 3,126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table>
<tr><th>구 분</th><th>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th></tr>
<tr><td>가. 증권 거래</td><td>
<table>
<tr><th>평가항목</th><th>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th><th>주문집행능력</th><th>비용 또는 수익</th><th>합계</th></tr>
<tr><td>항목 가중치</td><td>60%</td><td>20%</td><td>2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5척도(A, B, C, D, E)로 평가<br>*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br>* 각 평가자가 평가한 5척도의 환산점수는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br>*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br>*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td></tr>
<tr><td>나. 장내 파생 상품 거래</td><td></td></tr>
</tabl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 |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수익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

| | |
|---|---|
| |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추적대상지수 | "KOSPI200지수"를 말합니다. |
| 지정참가회사 |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 지정참가계약 | 이 투자신탁에 관한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납부금등 |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
| 설정단위<br>(Creation Unit)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
| 설정단위의 평가가액 |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
| 납부자산구성내역<br>(Portfolio Deposit File)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를 위하여 금전,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추적오차율 | 수익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
| 지수산출기관 |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